하나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상품-275호(2021.09.03)

『 (내맘) 적금 』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 (2021.9. 3 현재, 세전)

구 분	내 용	
상품특징	자동이체만으로 우대금리 제공~! 가입 목적에 따라 만기, 자동이체주기, 가입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상품	
상품유형	적립식예금(자유적립식)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	
계약기간	6 개월이상 60 개월이하 (월단위 또는 일단위 지정)	
가입금액	1 천원 이상 ~ 500 만원 이내 (월 5 백만원 범위내)	
기본금리	계약기간 / 6개월~7개월 미만 / 7개월~13개월 미만 / 13개월~25개월 미만 / 25개월~37개월 미만 / 37개월~60개월 금리 / 연 0.65% / 연 0.75% / 연 0.85% / 연 0.95% / 연 1.05% ▶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	
우대금리	하나은행 통장에서 계약기간의 1/2이상 월부금자동이체실적 충족시 연0.5%	
일부해지	O	만기일 이전 2회 가능 (중도해지금리 적용)
세제혜택	O	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예금담보대출	O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
예금자보호	O	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도해지 금리

경과기간	중도해지금리
1개월 미만	연0.1%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0.15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0.2%
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(주1) x 경과율(주2) (단, 연0.2% 미만 시 연0.2% 적용)

(주 1) 차등률 : 기간(6 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
- 6 개월이상~9 개월미만 경과 시 60% 적용, 9 개월이상~11 개월미만 경과 시 70% 적용, 11 개월이상 경과 시 90% 적용

(주 2) 경과율 : 경과일수/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※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
(예시) 중도해지금리 1.564721% 산출 시 1.564%로 적용

만기 후 금리

- 1 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2
-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4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하나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-상품-275 호(2021.09.03)

『(내맘) 적금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『(내맘)적금 특약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」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 단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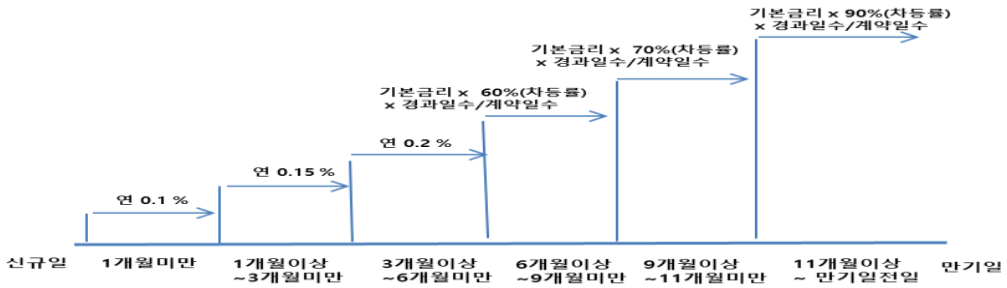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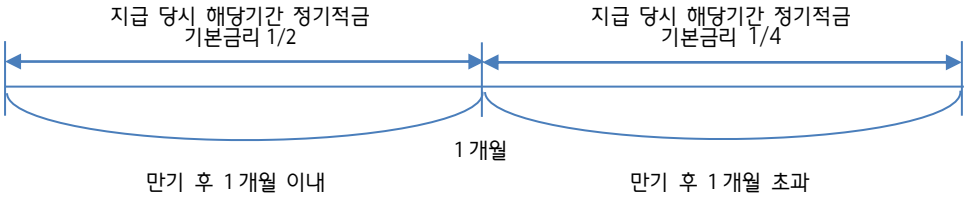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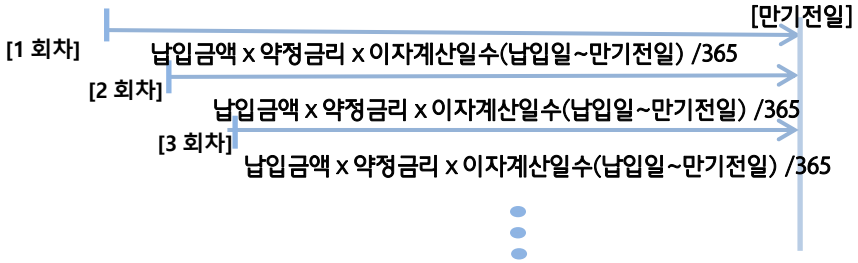
- 상 품 명 : (내맘) 적금
- 상품특징 : 자동이체만으로 우대금리 OK~

  가입 목적에 따라 만기, 자동이체주기, 가입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상품

2 거래 조건 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1. 9. 3 현재, 세전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3">내 용</th></tr>
<tr><td>가 입 대 상</td><td>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</td><td>상 품 유 형</td><td>적립식예금</td></tr>
<tr><td>거 래 방 법</td><td colspan="3">■신규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 ■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</td></tr>
<tr><td>계 약 기 간</td><td colspan="3">6 개월이상 ~ 60 개월이하 (월 또는 일단위 지정)</td></tr>
<tr><td>가 입 금 액
및
적 립 한 도</td><td colspan="3">가입자 1 인당 매월 1 천원이상 ~ 500 만원 한도
▶ 계약기간 2/3 경과후 나머지 기간에는 경과전 기 적립한 잔액의 1/2 를 초과하여 입금 불가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이자지급방식</td><td>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해지시 이자를 지급</td><td>적 립 방 법</td><td>자유적립식</td></tr>
<tr><td>상품명 지정</td><td colspan="3">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가능 (예시: OO 적금, 여행적금, 일일적금 등)</td></tr>
<tr><td>기 본 금 리</td><td colspan="3">
<table>
<tr><th>계약기간</th><th>6개월~7개월 미만</th><th>7개월~
13개월 미만</th><th>13개월~
25개월 미만</th><th>25개월~
37개월 미만</th><th>37개월~60개월</th></tr>
<tr><td>금리</td><td>연 0.65%</td><td>연 0.75%</td><td>연 0.85%</td><td>연 0.95%</td><td>연 1.05%</td></tr>
</table>
▶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 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
</td></tr>
<tr><td>우 대 금 리
(연 0.5%)</td><td colspan="3">■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계약기간의 1/2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.5%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 시에 제공합니다. (단, 월별 1회 납입횟수만 인정) 중도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금리</td><td colspan="3">■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
<table>
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중도해지금리</th></tr>
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0.1%</td></tr>
<tr>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연0.15%</td></tr>
<tr>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연0.2%</td></tr>
<tr><td>6개월 이상</td>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(주1) x 경과율(주2)
(단, 연0.2% 미만 시 연0.2% 적용)</td></tr>
</table>
(주 1) 차등률 :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
- 6 개월이상 ~ 9 개월미만 경과시 60%, 9 개월이상 ~ 11 개월미만 경과 시 70%, 11 개월이상 경과 시 90%
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/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
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/td></tr>
<tr><td>만기 후 금리</td><td>■ 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2
■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4

</td></tr>
<tr><td>만기 자동
재예치
(총 3회)</td><td>■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,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,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.
■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되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합니다. 다만,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td></tr>
<tr><td>일 부 해 지</td><td>■만기일 이전 2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하며,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■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이자계산방법</td><td>■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합니다.

</td></tr>
<tr><td>원금 및
이자지급 제한</td><td>■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,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</td></tr>
<tr><td>만기앞당김 지급</td><td>자유적립식 예금으로, 만기앞당김 지급이 불가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자 동 이 체</td><td>■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.
※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</td></tr>
<tr><td>계약해지 방법</td><td>■영업점, 비대면채널 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에서 해지 가능
※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
■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(단, 만기자동재예치 신청을 해제한 경우에 이용 가능)
■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, '중도해지'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세 제 혜 택</td><td>■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단,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.
■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td></tr>
<tr><td>기 타 사 항</td><td>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휴면예금 및 출연</td><td>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,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'서민금융진흥원'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통 장 발 행</td><td>이 예금은 통장미발행이 가능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예금 해지 시 불이익	만기 전 예금해지시 계약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 적용
연계 · 제휴서비스	해당없음
위법계약해지권	■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만기 자동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및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DailyBanking 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99-1111,0,1)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